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04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최재란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준오, 송재혁, 신복자,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유정희,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홍국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가 이미 폐지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어 상위 법령 체계와 불일치 ·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비의 종류와 지급 기준을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의 일관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의 종류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되도록 정비함(안 제2조).
- 여비의 적용 기준을 총칙화하여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및 조문 간 중복 해소를 위해 삭제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국내여비의 정액)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의 예에 의한다.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삭제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여비 정액의 감액) 교육감은 예산의 부족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할 수 있다	삭제
제6조(준용)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삭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제2조(여비의 종류)의 용어를 수정하고,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